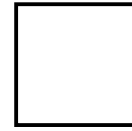


# 2015년 연말정산 안내문



<http://bit.ly>  
학교홈페이지-열린행정실

QR코드를 찍으시면 스마트폰으로 행정실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방법 개선

직계존속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위하여 휴대전화, 신분증 팩스전송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 세무서, 경북,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12월 10일부터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서 팩스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구, 경북소재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세무서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만19세(1996.12.31. 이전 출생)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조치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1997.1.1. 이후 출생)자녀는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연말정산 일정

- 학교 방과후수당(기타소득) 행정실 입력완료: **2016. 1. 13(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2016. 1. 15(금) -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
- 나이스 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방문 또는 우편제출: **2016. 1. 15(금) ~ 1. 23(토)**

※ 부양가족수당을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는 별첨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존속(남: 만60세 이상/여: 만55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 만19세 이하) 가정에서 나이스 접속을 위해 **학교에서 미리 원격업무신청**을 해야합니다. 나이스-좌측하단 원격업무지원 승인요청을 하세요.

2016년 소득세 세율을 조정하실 선생님께서는 변경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매년 1회 변경가능)

**학교주소:** 주소 OO중학교 행정실 (11111)

## 3. □제출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여부 확인, 기본공제대상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직계존속의 인증서 사용)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출력물 - 자료는 PDF 파일반영으로 일괄 등록가능, 중도 입사/퇴사할 경우 근무기간의 사용분만 인정이 되니 별도 계산후 입력해야함.  
예) 올해 3월 1일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3월 사용분부터 인정. 월별 공제자료를 활용, 별도 계산하여 입력 해야함.
- □기부금 또는 의료비 관련 영수증 -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있는지 확인,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첨부.
- □나이스 출력물 - 근로소득공제신고서(3번째 페이지 서명 필수),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월세명세서등 표지 출력

### + 해당선생님만 제출

- □2016년 부양가족 수당 신고서 - 현재 부양가족수당을 받으시는 선생님, 전출/입 등 변경이 생긴 경우 그달에 제출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기본 공제되는 소득세,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여 연말정산을 대비, 서류 미제출시 2015년도 세율로 유지.

## 4. 입력시 유의사항

- 5쪽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기부한 선생님께서는 나이스 인적공제 2번째줄과 세액공제에 법정기부금, 기부금명세서에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기부금명세서 등록 - 504-83-00510, 경북교육청, 법정기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세대주**만 가능
- 의료비공제에서 **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한뒤 입력(별도 계산 필요).
- 기타 나이스 입력방법등 기타 세부적인 안내는 학교홈페이지 - 열린마당 - 열린행정실 - 정보공개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제도 안내

5-1. 공제요건 안내

구분		공제 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기본공제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b>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b>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제외)	없음	
	직계존속 (부모님)	만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1955.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자녀)	만 20세 이하		없음	1995.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직계비속	없음		없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동일 거주지 거주	1955.12.31. 이전, 1995.1.1. 이후 출생자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b>만 70세 이상인 자</b>			1945.12.31. 이전 출생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b>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b>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 입양자(만20세 이하)가 있는 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 안함.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 3,333,334원**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액의 40%+350만원
- 총급여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액의 15%+750만원
- 총급여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00만원 초과액의 5%+1,200만원
-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원 초과액의 2%+1,475만원

예) 2015년 총 급여액이 3,333,334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0,000원.

500만원 이하여서 3,333,334원 - 3,333,334원\*70% = 1,000,000원

예)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구분		공제 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본인 지출한 비용만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그외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 저축	<b>세대주인</b>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없음	<b>있음</b>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 공제		<b>있음</b>	<b>있음</b>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 손/자녀 제외)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 지출한 비용만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b>있음</b>	<b>있음</b>	
	의료비	없음	없음	
	교육비	없음	<b>있음</b>	직계존속 제외
	기부금	<b>있음</b>	<b>있음</b>	정치자금기부금 본인만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5-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포함)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중 1인이 공제 가능. 이중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부부 이중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 아님)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5-3. 자주문의하는 내용 (사례별 예시)

## Q.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A.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Q. 부모님(장인/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 Q. 근로자가 2014년 12월 21일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A.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수 있음.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수 있음.

## Q.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A.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5.12.31)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음(소득세법 52조 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전 지출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수는 없으며, 결혼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수 있음.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함.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함.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함.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함.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함.**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함.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불가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됨.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함.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만 공제가능.

## 6. 기부자 명단

### 6-1. 국군장병위문성금 기부자 명단

순번	명단	금 액
1	가OO	10,000
2	나OO	10,000
3	다OO	10,000
4	라OO	10,000
5	마OO	10,000
6	바OO	10,000
7	사OO	10,000
8	아OO	10,000
9	자OO	10,000